

## 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20호

『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4조제3항 및 『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 제3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고시

#### 1. 법적근거

- (정의<sup>法제2조</sup>) 국토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·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
- (절차<sup>法제4조</sup>) 국토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·5년마다 타당성 검토, 지자체 의견 조회→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

#### 2. 주요내용

- ① 노후계획도시의 현황, 정비 필요성 및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-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·기본방향·기본전략
- ③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절차 및 체계
- ④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
- 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작성 기준
- ⑥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

#### 3. 기타 참고사항

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molit.go.kr>)-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